

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

본 안건은 2009년 11월 2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9년 11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1. 제안이유

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가. 개발제한구역이 관통하는 대지 중 개발제한구역인 부분의 해제가능 기준면적을 정함(안 제14조).
- 나.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제2종근린생활시설을 허용함(안 제23조).
- 다. 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서 기존 공장, 창고시설, 연구소의 건폐율을 완화하고, 자연녹지지역 내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와 공원의 건폐율 정함(안 제53조).
- 라. 자연녹지지역 내에서 도시계획시설은 용적률을 100퍼센트 이하로 건축할 수 있도록 함(안 제55조).
- 마. 기존 공장이 당해 용도지역에 맞지 않는 건축물이 된 경우에도 업종변경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함(안 제60조).
- 바.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규정을 삭제함(안 제64조).
- 사. 공익사업 등으로 이전하게 되는 레미콘·아스콘 공장의 계획관리지역 내 입지를 허용함(안 별표 19).

3. 검토의견

- 본 개정 조례안은 종전의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던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과 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」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

조례안 세부내용을 보면,

- 안 제14조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 가능한 관통대지의 기준면적을 정하였으며,
- 안 제23조에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일부를 허용하였으며,
- 안 제53조에서는 정부의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토지이용규제 완화 정책에 따라 자연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 내 기존 공장, 창고시설, 연구소 등에 대한 건폐율을 완화하였음.
- 또한, 안 제55조에서는 자연녹지지역 내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건축이 가능하도록 용적률을 100 퍼센트로 이하로 상향 조정하였으며,
- 안 제60조에서는 기존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법령개정 등으로 당해 용도지역에 맞지 않는 건축물이 된 경우 오염배출 수준 등이 동등하거나 낮을 경우 업종변경이 가능하도록 완화하였으며,
- 안 [별표 19]에서는 공익사업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 공장의 경우 계획관리지역 내 입지를 허용한 「국토계획법 시행령」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였음.

이상과 같이 조례안 검토결과,

- 본 개정 조례안은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적합하도록 조례를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,
- 안 제60조에서 정한 기존 공장이나 제조업소에 대한 업종변경 완화의 경우 업종 변경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에 따라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는 측면이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.